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5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2

I. 개요

1.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35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4. 15.
- (3) 회 부 일 : 2026. 4.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는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에 달하며,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를 포함할 경우, 위기가구는 전국에 122만 9,144가구에 달하여 관리비 지원 등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u>임차료</u> ,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주거급여) ① ----- ----- <u>임차료, 관리비,</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조1)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종으로 구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되어 있으며, 이 중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기준은 「주거급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²⁾에 따르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보장기관의 장이 해당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하여 위기가구로 발굴하도록 하고 있음.

- 2026년 3월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는 11만 3,613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관리, 청소, 경비,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택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선유지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개정안은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를 관리비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8.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 다만, 관리비의 구성 항목은 공동주택의 유형이나 관리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 등 개별 사용량에 따른 공공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요금 감면제도와 지원 대상 및 목적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비를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 중 실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과 공공요금 성격의 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감면제도와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동일한 비용에 대한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관리비의 범위와 지원방식, 지원한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택유형별 관리비 수준 차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

지원내용	비 고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 : 7, 8, 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65세 이상 * 영유아 :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지원내용	비 고
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관련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에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작성기준일 2025.11.30.)

□ 또한,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분산되어 있음.

소득인정액 산정, 급여의 신청·조사·결정 및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반면, 주거급여의 지급방식과 주택조사,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운영,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지원수준을 심의하는 주거급여 소위원회 운영 등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음.

즉, 관리비를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급여 항목의 추가를 넘어 주거급여 제도의 지원 범위와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재정 소요와 지원체계 개편, 관련 시스템 정비, 기존 공공요금 감면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충분한 협의와 정책적 조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600)³⁾이 발의되어 2026년 4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반영 폐기 의결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600)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관리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8조의2(관리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관리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관리비의 보장범위 및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공감함.
- (지방자치단체*) 중복 지원여부, 주거유형에 따른 수급자 간 형평성, 지자체 재정부담, 현금 지원시 타 용도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문 의 처
02)6788-5497